

행정기획위원회
소관

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

성 북 구
(일자리정책과)

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의안 번호	5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11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「패션봉제지원센터」 및 「보문동 공동작업장」의 위탁 기간 만료일(2026. 1. 31.)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2 (승인 및 동의)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m ²)		비고(現 위탁기관)
		대지	건물	
패션봉제지원센터	돌곶이로25길 73 (장위동)	179m ²	224.98m ² 지하1/지상2	(사)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(위탁기간 2023.2. ~ 2026.1.)
보문동 공동작업장	지봉로20길 80 (보문동)	190.7m ²	331.75m ² 지상4	

나. 위탁기간 : 2026. 2. 1. ~ 2028. 12. 31. (2년 11개월)

다. 위탁사무의 범위

- 패션봉제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
- 보문동 공동작업장 시설 운영 및 관리

라.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: 적정

마. 선정방식 :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3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5)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